

선	기관의 장
람	

제 148호

2026년 8월 10일 (월)

차레

공고

- 화성시 공고 제2026-2810호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화성시 공고 제2026-2811호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화성시 만세구 공고 2026년 7월 지방소득세(법인,개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 제2026-757호

고시

- 화성시 고시 제2026-700호 과량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 화성시 고시 제2026-703호 도로명주소 개별고시

회									
람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법원판결에 의한 자동차 소유권 강제이전)

「자동차관리법」 제12조(이전등록), 「자동차등록령」 제27조(양도자의 이전등록 신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이전등록 신청)에 따라 자동차 강제이전 예정사실을 양수인에게 최고하고자 최고장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지 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0일

화 성 시 장

- 1. 공 고 명: 자동차 강제이전 최고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2. 공고기간: 2026. 8. 10. ~ 2026. 8. 25. (15일간)
- 3. 공고대상

차량번호	양수인(피고)	주소	비고
경기91사2112	유**	경기도 화성시 ***	

- 4. 법적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12조, 「자동차등록령」 제27조
- 5. 공고 내용

- 1) 양수인께서는 공고기간 내 위 차량에 대한 책임보험 가입, 취·등록세 및 기타 제반사항 납부비용, 신분증 등을 준비하여 소유권 이전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 2) 위 공고기간 내에 양수인께서 소유권 이전등록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자동차등록령」 제27조에 의거 2026. 8. 26. 이후 강제이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 3)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차량등록과(☎031-5189-330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공고 제2026-281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에 의한 압류등록된 차령초과 자동차의 자진말소등록 신청이 있어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도록 우편발송 하였으나, 폐문 부재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일경과 후 관련법규에 따라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 제목: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 기간: 2026. 8. 10. ~ 2026. 8. 24.
3. 말소등록 예정일: 2026. 8. 25. 이후
4. 공시송달 대상 차량

신청대상 자동차			이해관계 내 용	이 해 관계인	송 달 지	반송사유
등록번호	차명	성명				
58주4565	쏘나타 (SONATA)	차*임	저당	원*희	부산광역시 수영구 ***	폐문부재
10도2962	그랜저(GRANDEUR)	함*호	저당	조*태	경기도 오산시 ***	폐문부재
서울44노 3337	아반떼엑스 디	공*연	저당	조*용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소불명
21로1763	로체	(주)코**	저당	김*석	대전광역시 유성구 ***	폐문부재

5. 공시송달 내용: 위 자동차의 이해관계인은 말소예정일 이전에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고, 진행 중일 경우 추진사항을 즉시 알려주시기 바라며, 만약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시에는 말소등록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화성시 차량등록과 차령초과 예고통지 담당자(031-5189-33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8. 10.

화성시장

화성시 만세구 공고 제2026-757호

지방세 공시송달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권*봉 외 102명(기재내역 별첨)
- 서류의 송달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등
- 서류의 명칭: 2026년 3월 ~ 7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 서류의 내용: 2026년 3월 ~ 7월 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103건

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납부 기한을 2026년 8월 31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에 따라 공고하오니, 우리 구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전국 금융기관,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등의 방법으로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부과내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화성시 만세구청) 및 심판청구(조세심판원)를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공시송달 공고에 대하여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화성시 만세구청 세무1과 지방소득세1팀 (☎031-5189-11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6일

화성시 만세구청장

고 시

1. 화성시 효행구 정남면 쾌랑리 산60-45번지 일원의 쾌랑지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화성시청 도시정책실 도시정책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가.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 붙임
 - 나.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도 및 지형도면 : 붙임
 - 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시정책과(031-5189-33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화 성 시 장

I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① 용도지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61,546	감) 96	61,450	100.00	
녹지지역	소 계	27,087	감) 96	26,991	43.92	
	자연녹지지역	27,087	감) 96	26,991	43.92	
공업지역	소계	34,459	-	34,459	56.08	
	일반공업지역	34,459	-	34,459	56.08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 호	위치	용 도 지 역		면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	정남면 패랑리 산60-45번지 일원	자연 녹지 지역	자연 녹지 지역	26,991	100	○ 중복결정된 토지제척
		일반 공업 지역	일반 공업 지역	34,459	250	-

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괘랑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정남면 괘랑리 산60-45번지 일원	61,546	감) 96	61,450	화성시고시 제2023-588호(2 023.7.19.)

■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위치	면적 (㎡)	변경사유
변경	-	정남면 괘랑리 산60-45번지 일원	61,450	○ 중복결정된 토지제척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

1. 교통시설(도로) (변경)

가. 도로 총괄표

유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노선수	연장(m)	면적(m²)
합계	기정	1	347	4,751	1	347	4,751	-	-	-	-	-
	변경	1	337	4,655	1	337	4,655					
소로	기정	1	347	4,751	1	347	4,751	-	-	-	-	-
	변경	1	337	4,655	1	337	4,655					

나.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47	패랑리 26-42	패랑리 산60-45	일반 도로	-	화고 제2023-588호	보도폭 2.5m (편측)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337	패랑리 26-54	패랑리 산60-45	일반 도로	-		보도폭 2.5m (편측)

다.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 면적변경 - 4,751㎡⇒4,655㎡ - 감) 96㎡ ○ 시점변경 - 패랑리 26-42 ⇒ 26-54	○ 중복결정된 토지 제척

2. 공간시설(녹지)

가.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경관 녹지	패랑리 산60-45번지 일원	22,336	-	22,336	화고 제2023-588호	자연녹지 지역

③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변경없음)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합 계		34,459	합 계		34,459	
	A1	34,459	소 계		34,459	
			A1-1	괘랑리 산60-45번지 일원	31,463	사면·조성 녹지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참고)
			A1-2	괘랑리 26-17번지 일원	2,996	사면·조성 녹지 포함 (토지이용계획도 참고)

4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1. 건축물 등에 관한 사항 (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가구번호)	구분		계획내용
	A1-1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분류코드 23) 부대시설: 주용도(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중 다음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자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도면참조(소화공간이 확보되도록 배치)
		형 태		레미콘 생산 설비의 경우 밀폐형 계획 수립
		색 채		화성시 경관계획에 따름
		건축선		-
		기 타		
	A1-2	용도	허용 용도	주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분류코드 22,26) 부대시설: 주용도(공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 중 다음 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나목, 자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자목, 하목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창고시설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시설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높 이		-
		배 치		도면참조(소화공간이 확보되도록 배치)
		형 태		-
		색 채		화성시 경관계획에 따름
		건축선		-
		기 타		

2. 기타사항

가. 교통처리계획에 관한 사항 (변경)

□ 기 정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구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제시(3개소)
	—	• 세마교차로의 전구간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최대한 후퇴하여 이격 설치
진 출 입 동 선	㉠	• 사업지구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신설 및 차로운 영계획 제시(세마교차로~사업지구) — 폭 10m, 연장 347m — 차량회전 전구간 회전반경 12m 확보
	㉡	• 사업지구 진출입 신설교차로에 점멸등 설치(2개소)
	㉢	• 소로1-1호선에서 만년로의 우회전진출 접속부 교통섬 확대로 차량대기공간 추가확보 및 회전반경 12.0m 확보
	㉣	• 소로1-1호선의 만년로 접속부 교통섬 축소로 차로폭원 확대(4.8m→5.0m)
	㉤	• 소로1-1호선에 비상시 차량회차공간 확보(2개소)
	—	• 소로1-1호선 남측 초입 교차로에 차량유도선 설치(1개소)
	—	• 소로1-1호선 경사도는 9% 미만으로 계획
	—	• 소로1-1호선에 보도 설치(폭 2.5m)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설치(8개소)
	㉦	• 세마교차로 동측 우회전 노면도류화시설을 보행섬으로 변경설치(2개소)
	—	• 추후 개별필지 인허가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
	—	• 주차장 공급규모 검토 — 법정주차 : 16대 — 주차수요 : 115대 — 계획수요 : 148대 (일반형 68대, 대형차량 80대) — 추후 개별필지 인허가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세부적인 주차계획 수립
교통안전 및 기타	—	• 소로1-1호선에 최고속도 20km/시 제한 및 교통표지판 7개소 및 노면표시 6개소 설치
	㉧	• 사업지구 내부와 소로 1-1호선의 상시 도로 관리를 위한 CCTV설치(3개소)
	㉨	• 소로1-1호선의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해 일과시간내 차량통제원 상시배치 (1개소)
	—	• 소로1-1호선의 만년로 진출부에 반사경 설치(1개소)
	—	• 소로1-1호선 보도 전구간에 안전펜스 설치(약 220m)
	—	• 소로1-1호선의 만년로 접속부 보행섬 인근에 안전펜스 설치 (약 90m)
	—	• 소로1-1호선에 염수(정수)분사장치 등 동계 결빙 방지 방안 수립
	—	• 2단으로 계획된 A-1 가구 내 보행자 이동통로 설치(계단 등)

□ 변경

구 분	지점	개 선 방 안
주변가로 및 교차로	-	• 사업지구 주변 분석대상 교차로 신호주기 최적화 방안 제시(3개소)
	-	• 세마교차로의 전구간 횡단보도를 교차로에서 최대한 후퇴하여 이격 설치
진 출 입 동 선	㉠	• 사업지구 차량진출입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소로1-1호선) 신설 및 차로운 영계획 제시(세마교차로~사업지구) - 폭 10m, 연장 337m - 차량회전 전구간 회전반경 12m 확보
	㉡	• 사업지구 진출입 신설교차로에 점멸등 설치(2개소)
	㉢	• 소로1-1호선에서 만년로의 우회전진출 접속부 교통섬 확대로 차량대기공간 추가확보 및 회전반경 12.0m 확보
	㉣	• 소로1-1호선의 만년로 접속부 교통섬 축소로 차로폭원 확대(4.8m→5.0m)
	㉤	• 소로1-1호선에 비상시 차량회차공간 확보(2개소)
	-	• 소로1-1호선 남측 초입 교차로에 차량유도선 설치(1개소)
	-	• 소로1-1호선 경사도는 9% 미만으로 계획
대중교통 자전거 및 보행	-	• 소로1-1호선에 보도 설치(폭 2.5m)
	-	• 보행동선 단절구간에 횡단보도 설치(8개소)
	㉦	• 세마교차로 동측 우회전 노면도류화시설을 보행섬으로 변경설치(2개소)
	-	• 추후 개별필지 인허가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자전거 주차시설 확보
주 차	-	• 주차장 공급규모 검토 - 법정주차 : 16대 - 주차수요 : 115대 - 계획수요 : 148대 (일반형 68대, 대형차량 80대) - 추후 개별필지 인허가시 법정기준을 충족하는 세부적인 주차계획 수립
	-	• 소로1-1호선에 최고속도 20km/시 제한 및 교통표지판 7개소 및 노면표시 6개소 설치
교통안전 및 기타	㉧	• 사업지구 내부와 소로 1-1호선의 상시 도로 관리를 위한 CCTV설치(3개소)
	㉨	• 소로1-1호선의 원활한 차량진출입을 위해 일과시간내 차량통제원 상시배치 (1개소)
	-	• 소로1-1호선의 만년로 진출부에 반사경 설치(1개소)
	-	• 소로1-1호선 보도 전구간에 안전펜스 설치(약 220m)
	-	• 소로1-1호선의 만년로 접속부 보행섬 인근에 안전펜스 설치 (약 90m)
	-	• 소로1-1호선에 염수(정수)분사장치 등 동계 결빙 방지 방안 수립
	-	• 2단으로 계획된 A-1 가구 내 보행자 이동통로 설치(계단 등)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도(변경)

1. 용도지역·지구에 관한 결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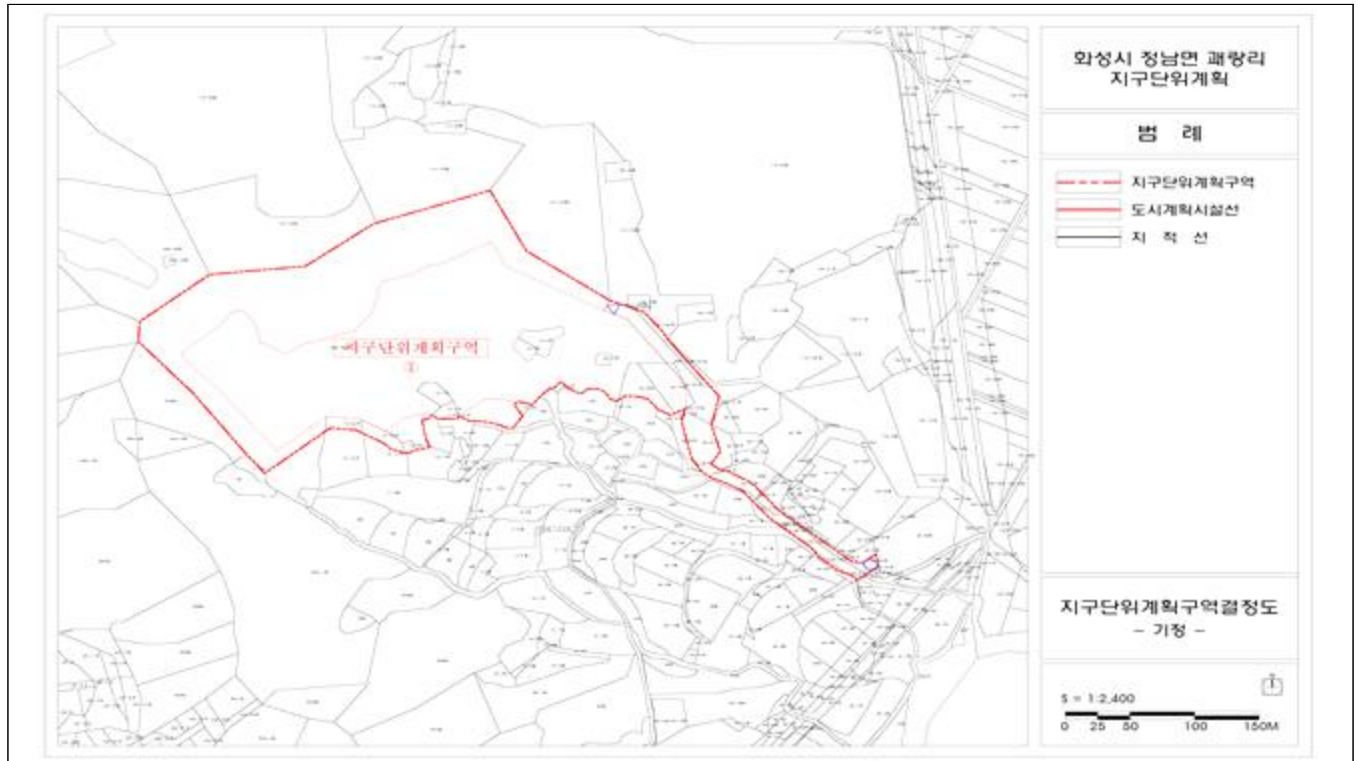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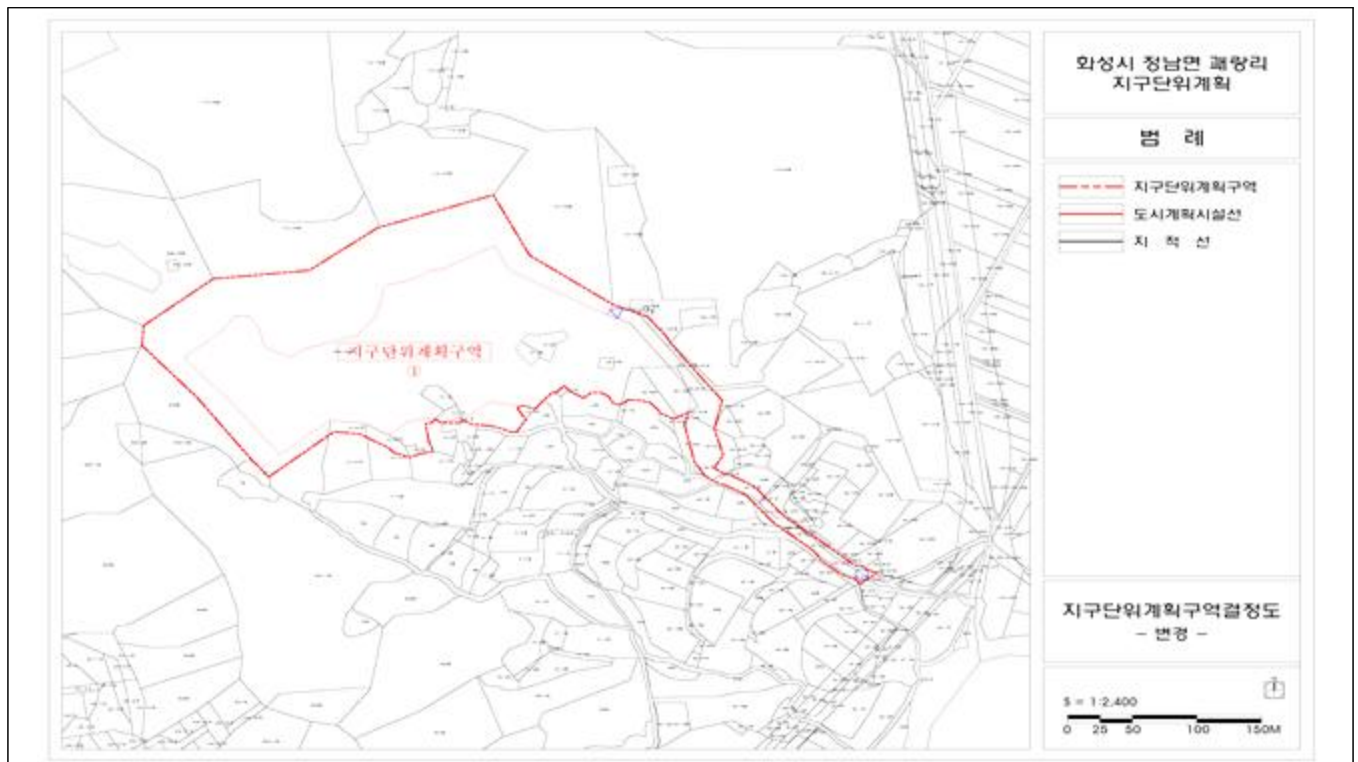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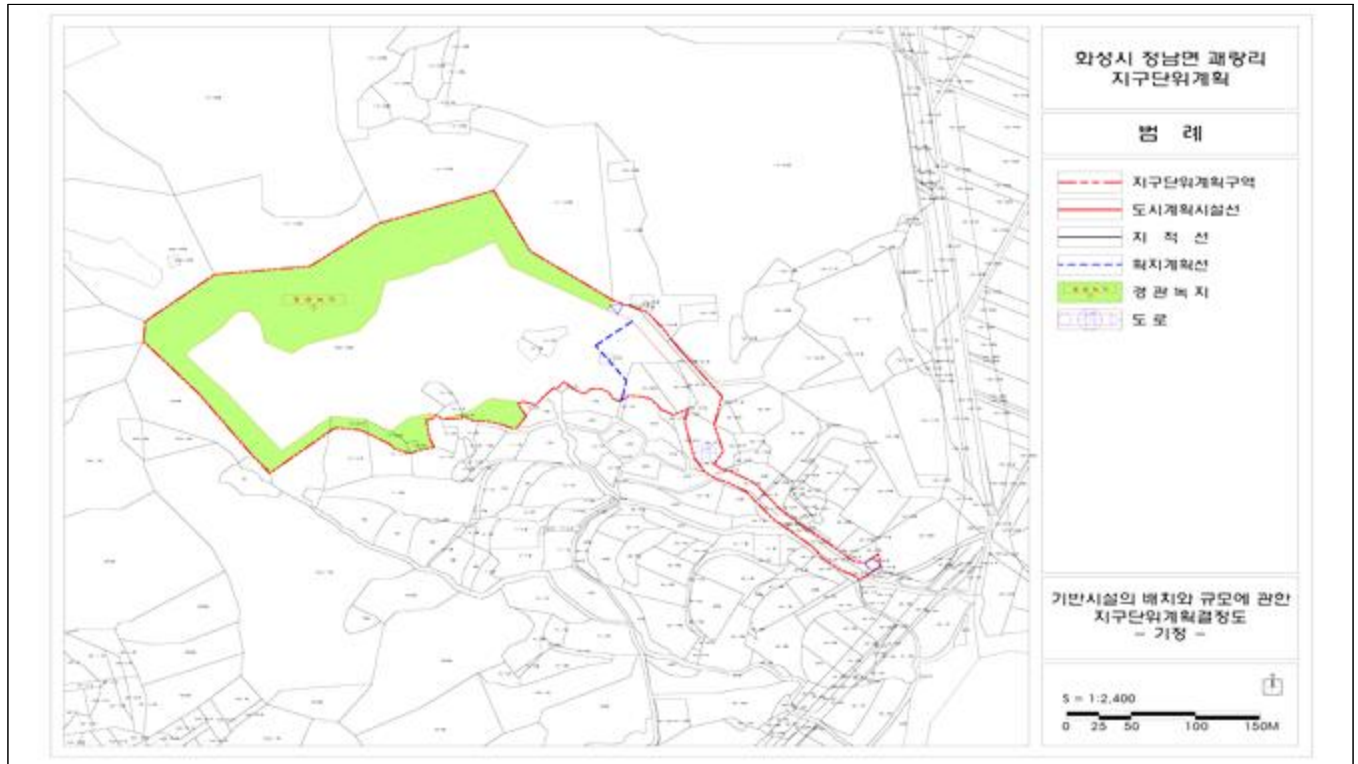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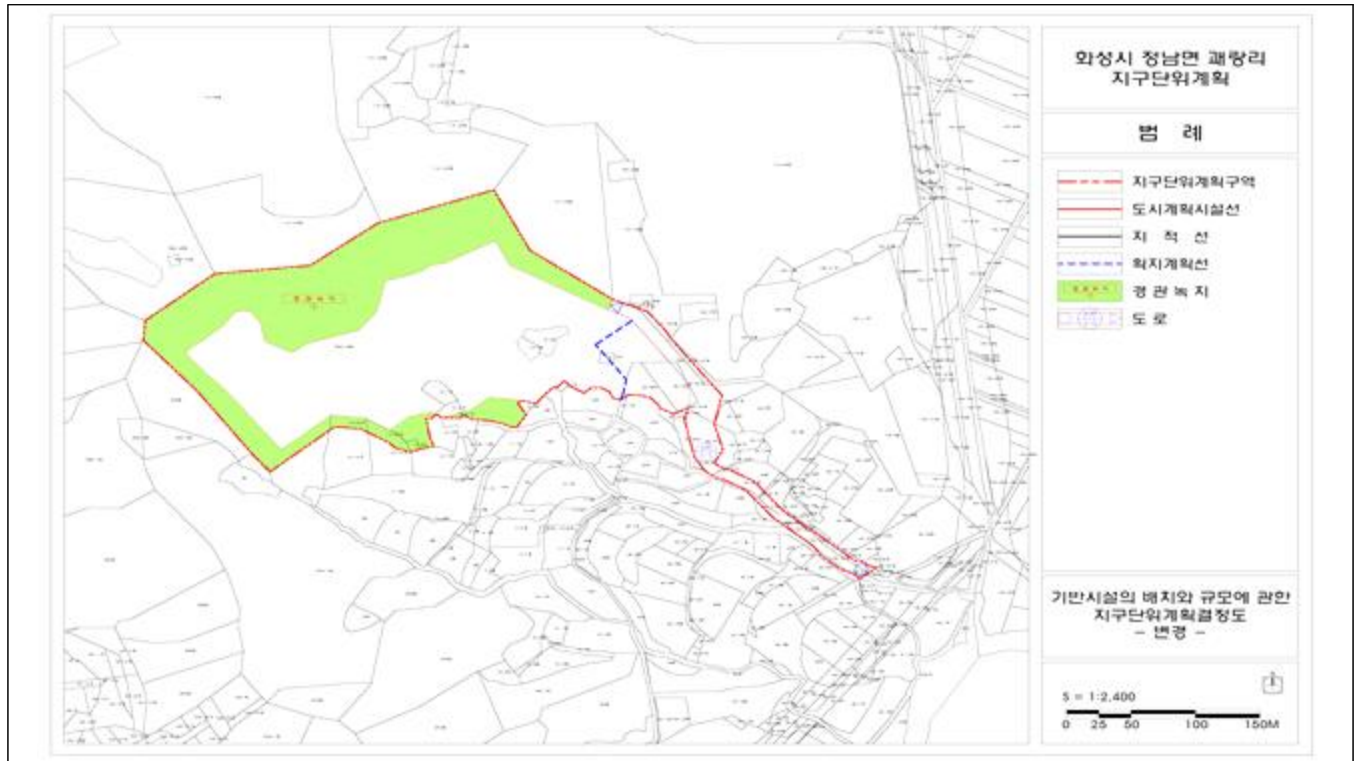


3.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등에 관한 결정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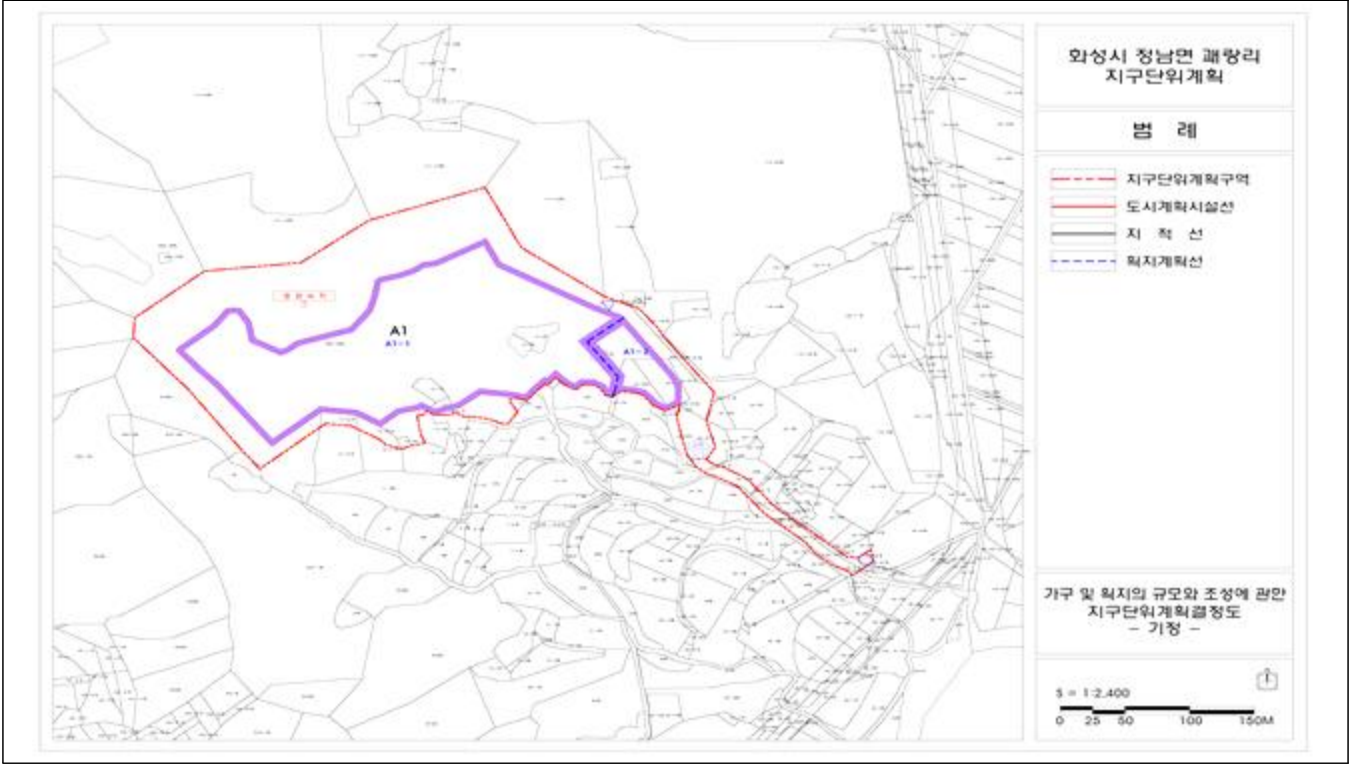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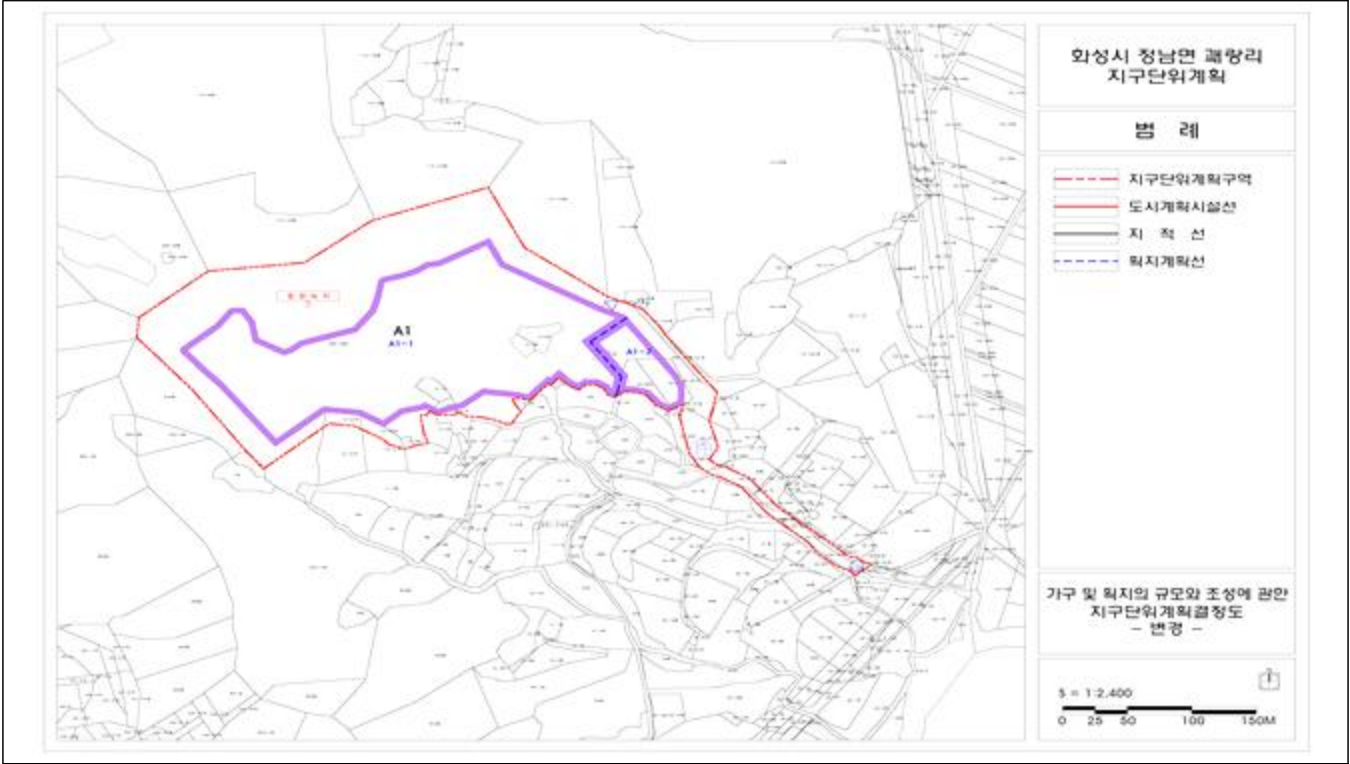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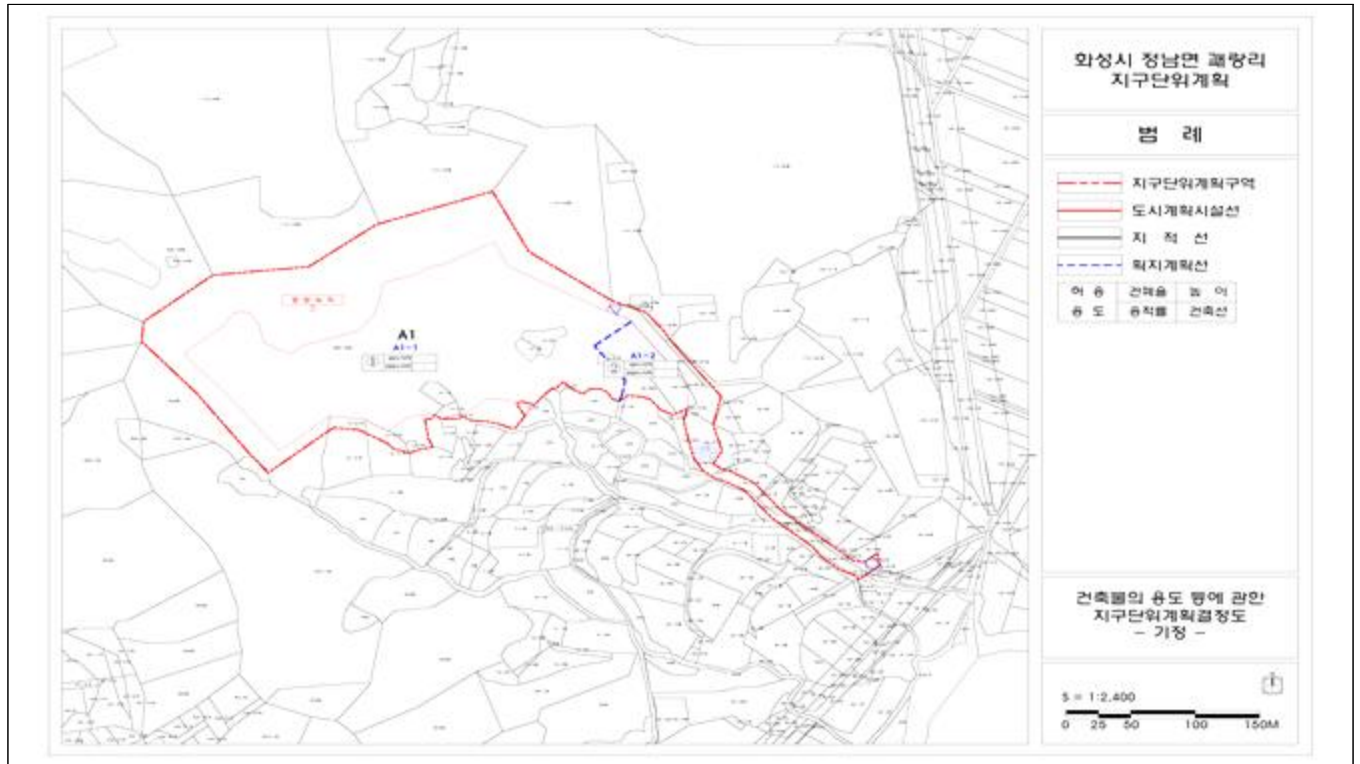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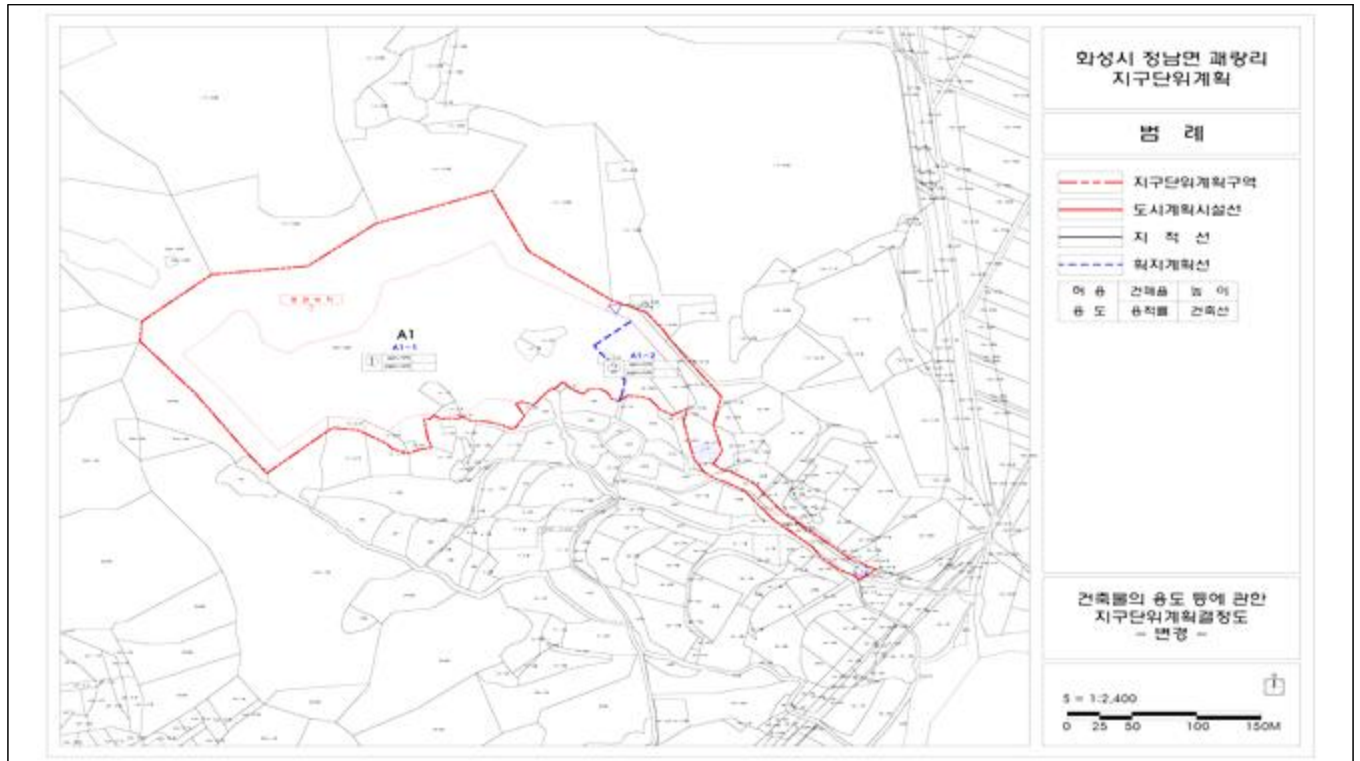


5.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결정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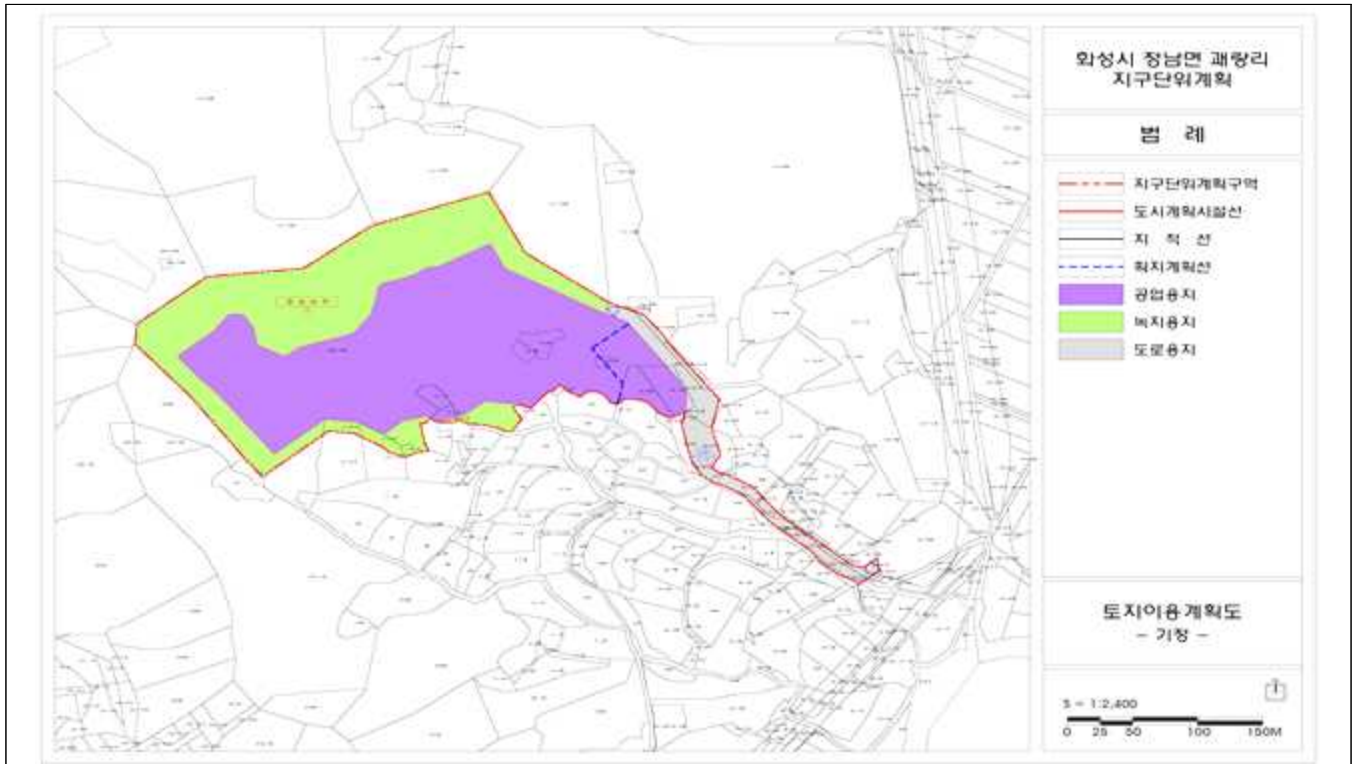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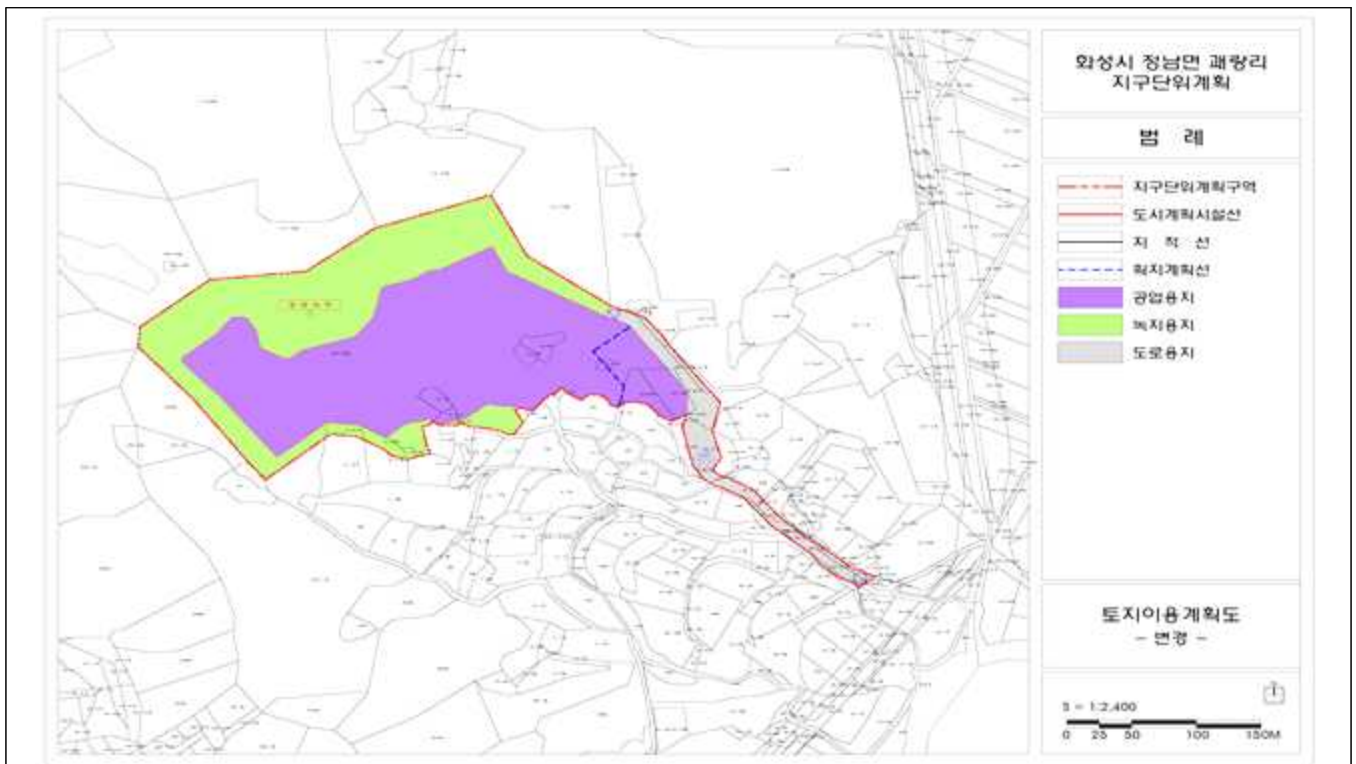


6. 토지이용계획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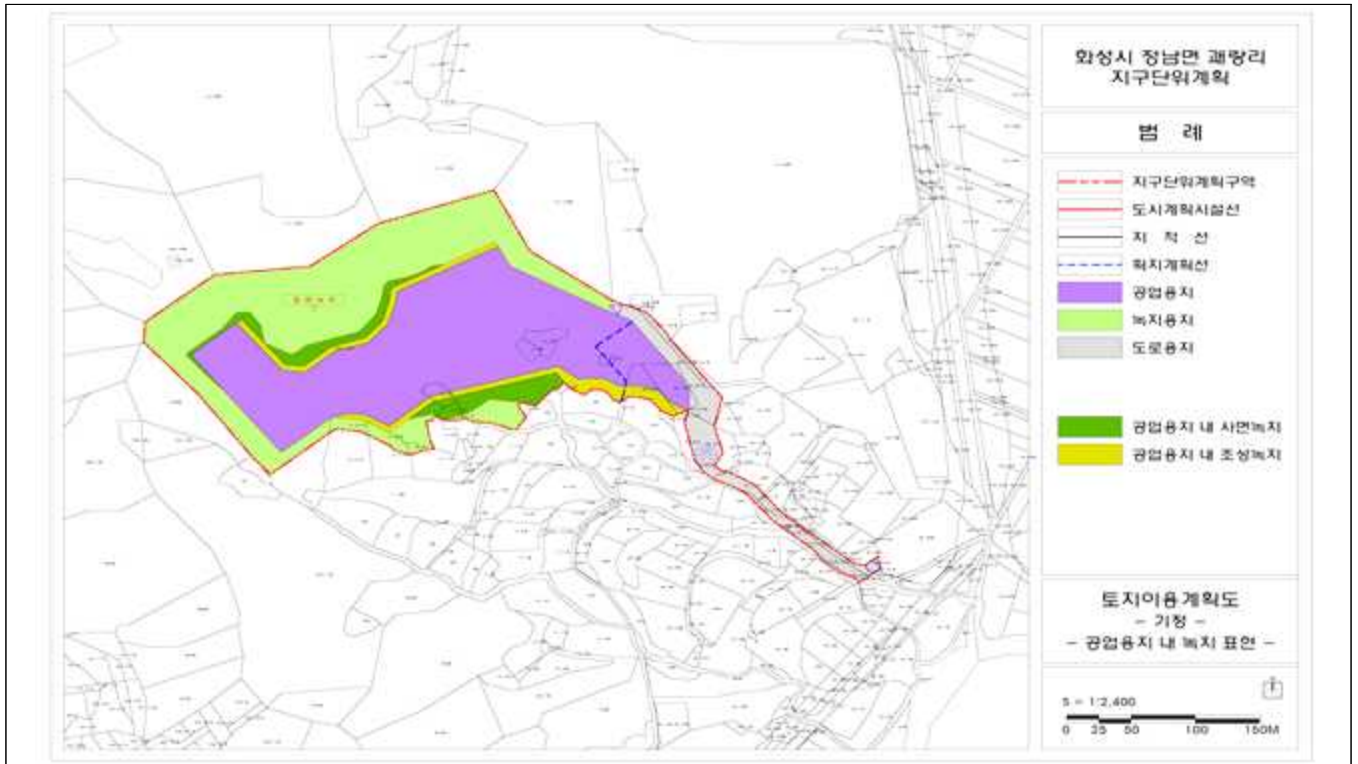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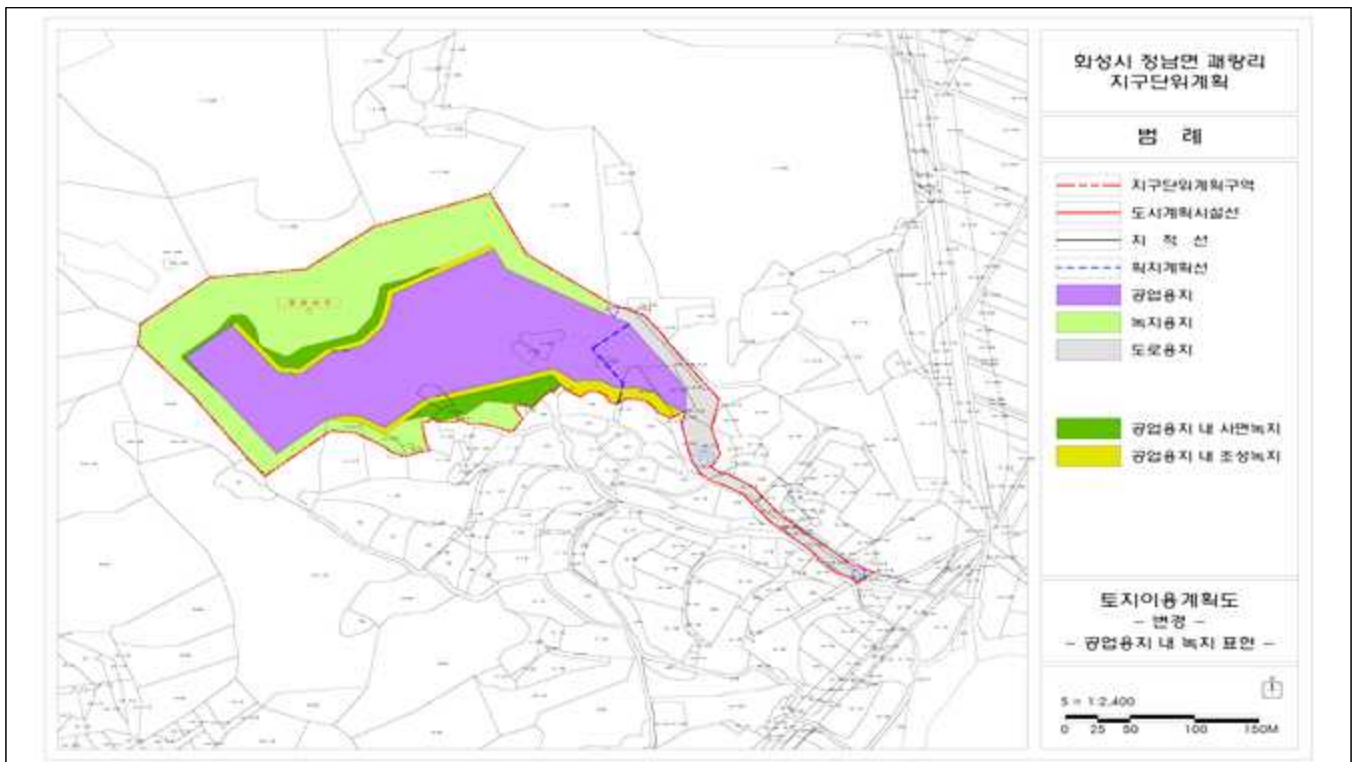


7. 토지이용계획도(공업용지 내 녹지표현)

- 기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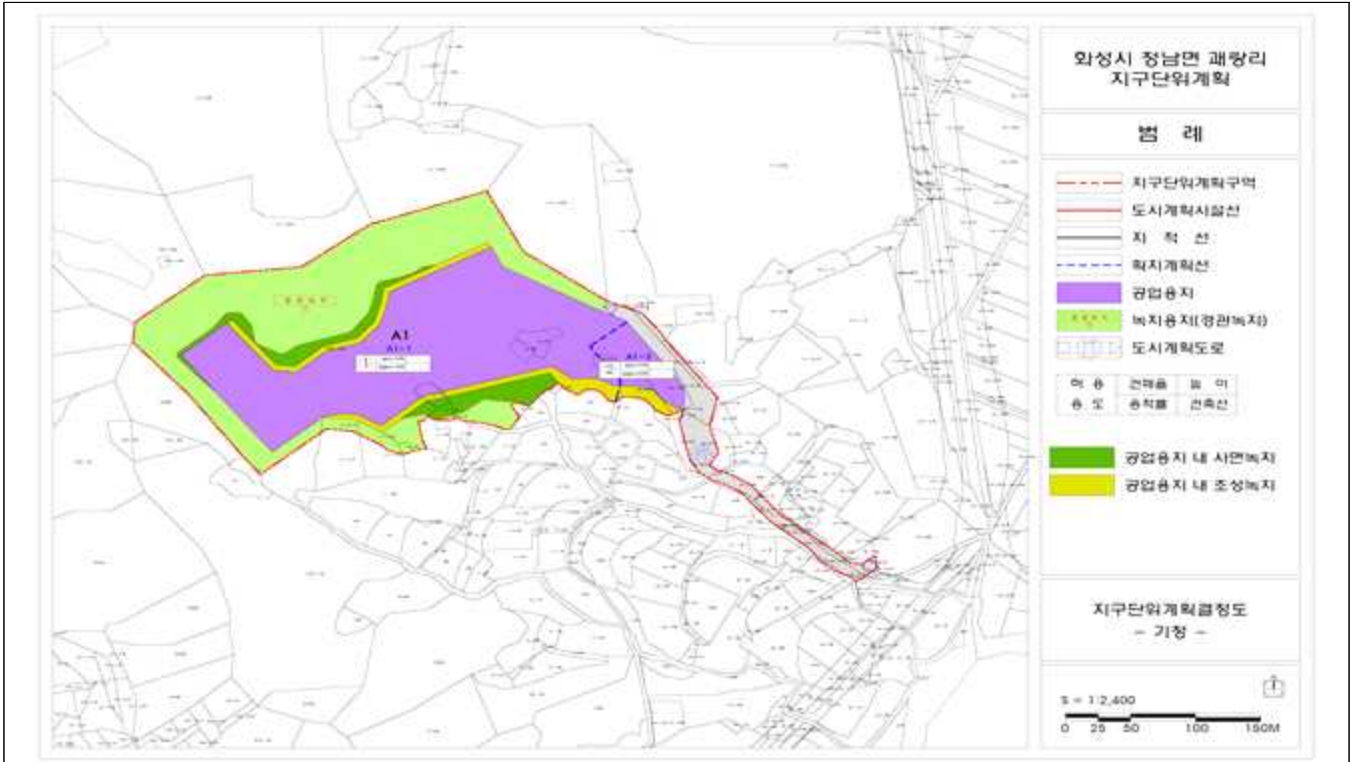


- 변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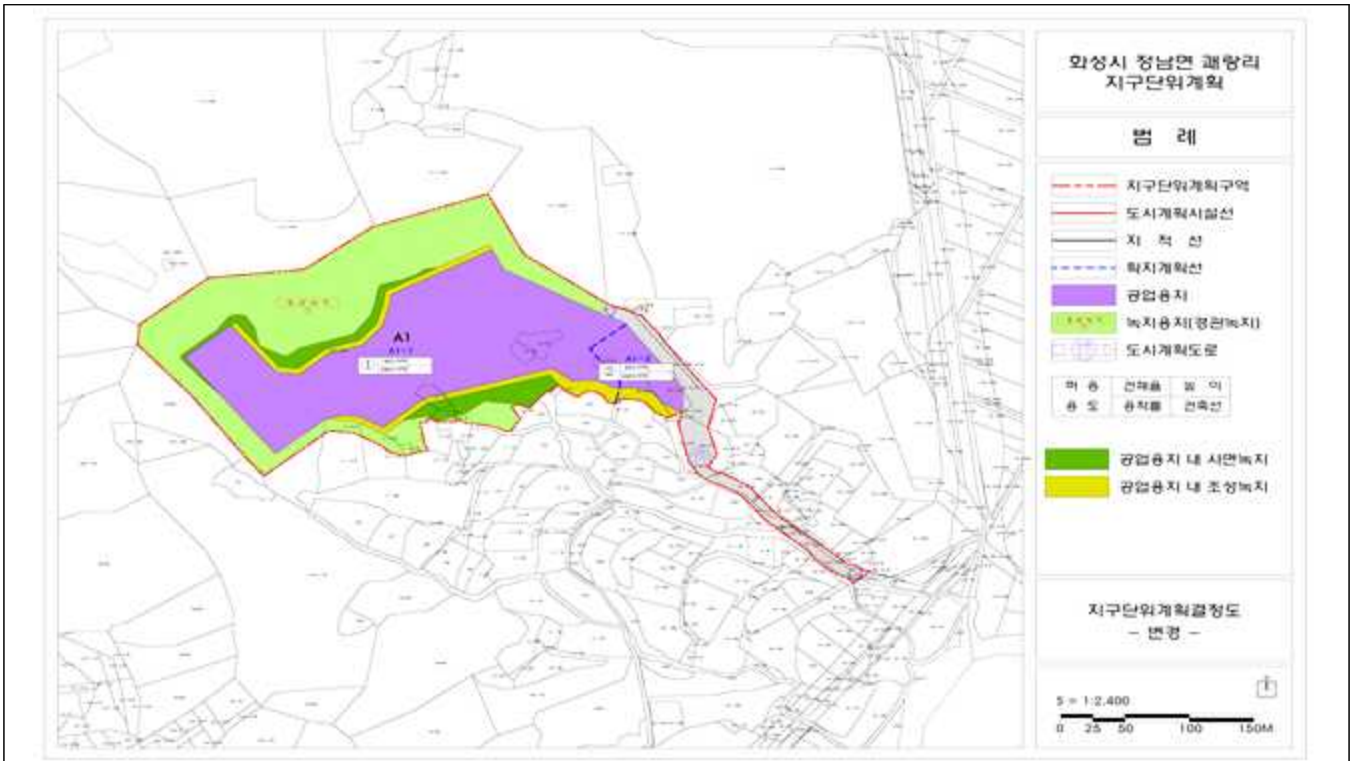


8.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 기 정 -



- 변경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동법 시행령 제24조 및 제26조에 따라 건물 등에 신규 부여, 변경, 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10.

화 성 시 장

○ 도로명주소 부여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서신면 전곡리 942 외 19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부여사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변경 :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장안면 어은리 529 외 4필지 외 1건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변경전)	도로명주소(변경후)	효력발생일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폐지 : 해당없음

토지소재지(지번)	도로명주소	폐지일	폐지사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청 토지정보과(☎5189-1646)에 문의.

또는 주소정보누리집(도로명주소 안내시스템, <https://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명, 동·층·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